

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제1항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(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)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3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청문 실시(의견제출) 사전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기간 : 2026. 8. 21.~2026. 9. 4.(14일간)
2. 예정처분 :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
3. 처분사유 : 「담배사업법」제17조제1항제5호
-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4. 처분대상

연번	상호	소매인명	영업소 소재지	지정일자
1	베이퍼스 노원	김*철	노원구 한글비석로22길 18, 3층	2019.8.28.
2	토마토마트	서*니	노원구 화랑로 449-7, 로우폴리스 1층 102호	2018.9.20.
3	지구마트	이*란	노원구 동일로1280, 지층 15호	2010.5.20.

5. 청문 출석(의견제출) 안내

- 가. 청문일시 : 2026. 9. 9.(수) 14시
- 나. 청문장소 : 노원구청 지역경제과
- 다. 준비자료 : 신분증, 의견서 및 입증 자료(필요시)
- 라. 의견제출 : 청문참석이 불가한 경우 2026. 9. 9.(수)까지 제출
 - 1) 방문 또는 우편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, 본관 2층 지역경제과(01689)
 - 2) 이메일 : jycho21@nowon.go.kr
 - 3) 팩스 : 02-2116-4620(팩스 전송 후 확인 요망 ☎02-2116-3484)

6. 유의사항

- 가.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「행정절차법」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

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- 다. 귀하는 「행정절차법」제3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·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라.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 드리며,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「담배사업법」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마.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지역경제과(☎02-2116-34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